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(☎760-7503) 및 교통행정과(☎770-7558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
2007. 11. 14.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1. 결정취지

- 우리구 주택가 밀집지역은 주차공간 협소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확보,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

2. 결정조서

- 주차장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고
신설	주차장	중구 신흥동2가 22-35	352.8	-	

3. 관계도면 : 생략(비치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)